



사회적협동조합 민간위탁 매뉴얼 공공기관용

2017. 9

목 차

제1장

민간위탁의 개념 _5

1. 민간위탁의 정의 _6
2. 민간위탁의 배경 _7
3. 민간위탁의 특징 및 차별성 _10

제2장

민간위탁 계약 유형 및 절차 _15

1. 민간위탁 계약대상 분야 _16
2. 민간위탁의 계약 유형 _20
3. 민간위탁의 계약 절차 _24

제3장

사회적협동조합의 민간위탁 참여 현황 _29

1. 제1절 사회적협동조합 운영 현황 _30
2. 사회적협동조합의 민간위탁 참여 현황 _33

제4장

사회적협동조합의 민간위탁 활성화 지원사업 _41

1. 사회적 경제조직의 민간위탁 관계 법령 _42
2.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우선구매 지침 _45

부록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우선구매 지침 _51



사회적협동조합 민간위탁
매뉴얼 공공기관용

제 1 장

민간위탁의 개념

1. 민간위탁의 정의
2. 민간위탁의 배경
3. 민간위탁의 특징 및 차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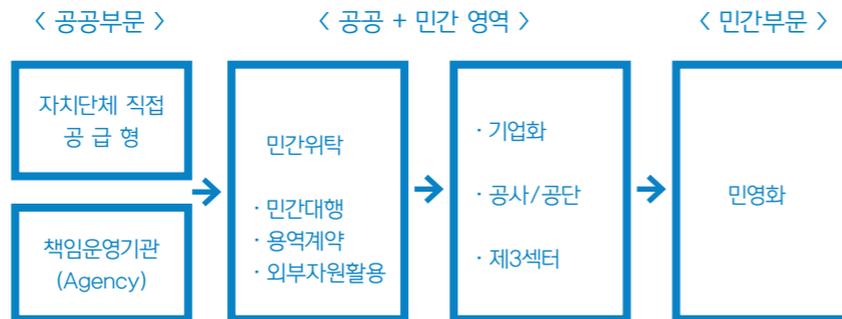
제 1 장

민간위탁의 개념

1. 민간위탁의 정의

- 민간위탁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공무원을 통해 직접 처리하지 않고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여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함
- 이는 조직의 경량화를 통해 저렴한 행정비용(Cost-Less)으로 행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고, 경영적 시각에서 행정업무를 관리하며 공공부문에서 직접 서비스를 공급하지 않고 민간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임
- 행정업무를 민간위탁은 주민들의 다양한 서비스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경감하고 주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980년대 초에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을 중심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음
-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민영화와는 달리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민간위탁은 대부분 서비스 계약(Contracting Out)이라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임

공공서비스 공급방식에서의 민간위탁의 위치



2. 민간위탁의 배경

1) 위기위탁의 필요성

- 과거에는 행정관청이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업무에 한해 민간위탁을 하였으나, 현대에 들어 행정의 복잡, 다양성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기 보다는 전문기술이 풍부한 민간에 맡겨 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음
- 이와 같이 행정업무를 민간위탁 하는 이유는 첫째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둘째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며, 셋째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단순행정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있음

< 민간위탁의 정책적 배경 >

구 분	요 인	방법 · 수단
민영화의 시대적 조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증대 • 규제, 지도중심에서 조정, 보완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경제원리 적용 • 민간경쟁기법 도입
행정기능의 비대화와 자성적 비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범위 확대, 조직확장, 공무원 증가 • 역기능 심화, 관료제 병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은 정부의 구현 • 행정의 생산성, 효율성 제고 • 민간자원의 활용, 활성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취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압박 심화 • 행정수요 급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기능의 제고 • 단순기능 위탁 > 운영전위탁

2) 민간위탁의 법적근거

- 민간위탁에 대한 관련 법적 근거는 “정부조직법”과 “지방자치법” 등에서 찾을 수 있음
- “정부조직법” 제6조에는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에 관한 조항을 두어,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정부조직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제2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 ①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의 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
 - 제1호 외의 업종의 경우: 5명 미만
- ② 제1항에 따른 주된 사업의 기준과 상시 근로자의 범위 및 인원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를 준용한다.
- ③ 중소기업청장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12.24]

- 민간위탁의 기본법령으로는 정부조직법 제6조 3항과 연계되어 있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는 “민간위탁”의 법적 개념이 제시되어 있음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시행 2017.9.5.] [대통령령 제 28266호, 2017.9.5.]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2. “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3.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

- 또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는 민간위탁의 근거, 추진체계, 대상사업, 수탁기관선정, 업무위탁방법, 위탁업무 서비스규격서, 사후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음

- 특히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에서 민간위탁의 기준이 제시되어 있고, 제12조에 위탁 대상기관 및 선정기준이 제시되어 있음
- 즉, 제12조 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이 민간위탁사무의 수탁자를 선정할 때는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공개모집 원칙은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행정기관이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해야 하고,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8266호, 2017.9.5.]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③ 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104조에서 ‘사무의 위임 등’에 관한 조항을 두어 민간위탁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04조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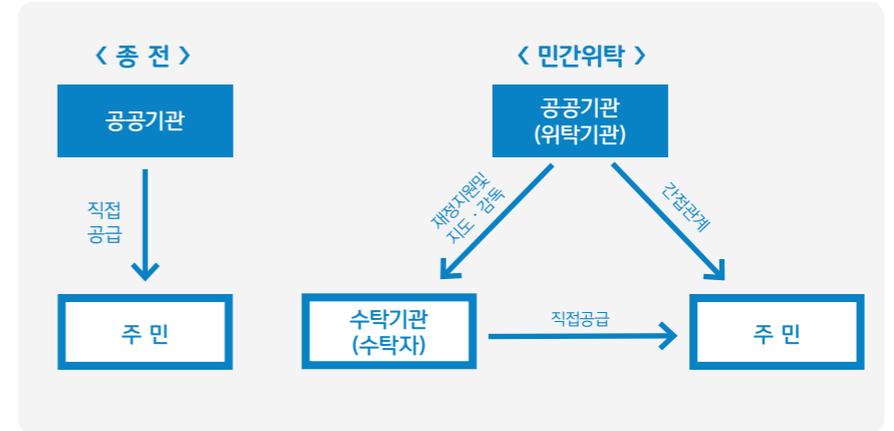
지방자치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3. 민간위탁의 특징 및 차별성

1) 민간위탁의 특징

- 민간위탁은 공공기관의 공공서비스 제공 기능을 민간이 위탁받아 운영하는 것으로, 행정서비스 제공 주체의 변경에 따른 영향을 지님
 - 공공서비스가 공공부문의 직접운영에서 간접운영 체제로 전환됨
 - 수탁업체는 전체적·부분적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공서비스 제공에 대한 기능·책임을 부여받음
 - 주민은 공공에 의해 선정된 민간의 수탁업체로부터 보다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재정활용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
- 또한 민간위탁이 가져오는 서비스 공급체계 변화는 공공기관-수탁업체-주민의 관계 재설정을 수반함

서비스 공급체계의 변화



① 공공기관과 수탁업체 간의 관계

-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서비스 제공조건 이행을 위하여 수탁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장치를 강화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와 수탁업체간의 내부규제 증가

② 수탁업체와 주민과의 관계

- 공공서비스의 가격에 따라 공공서비스의 차등화가 우려되나 주민의 입장에서는 질 높은 서비스 수혜 예상

③ 공공기관과 주민과의 관계

- 관·민간에서 민간對민간으로 공공서비스 접촉점 변화
- 관주도형 공공서비스 제공 인식 불식 → 지방공공서비스의 운영주체 다양성으로 지방공공서비스 질 향상과 지방공공서비스의 경쟁력·전문성 확보 가능

2) 유사 용어와의 비교

- 민간위탁은 국가가 국민(의 일부)에게 제공해야 하는 사무(물품 및 서비스)를 민간기관이 대신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위임, 대행, 아웃소싱, 민영화, 용역 등과 유사하게 활용되고 있음
- 그러나 민간위탁은 정부가 구매하는 물품 및 서비스가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대상이 정부와 공급자 외의 제3자라는 특징이 있으며, 절차 및 활용에 있어 위임, 대행, 아웃소싱, 민영화, 용역 등과 차별성을 지님

- 민간위탁은 각종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함
- 조달계약의 관점에서 민간위탁의 특징과 차별성은 유사 용어와의 차이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음

① 위탁

- 위탁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보조기관·하부행정기관 등 하위기관이 아닌 동등한 수준의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등 민간기관에게 맡겨 수탁자의 권한과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행정사무를 수탁자의 명의로 책임 하에 수행하고, 법률효과도 1차적으로 수탁자에 귀속됨
- 이러한 점에서 공권력에 의한 강제성이 수반되는 권력적 사무 또는 재량적인 가치 판단을 요하는 사무 등은 위탁의 대상으로 선정하기 곤란하며, 보다 세부적으로 위탁과 민간위탁을 구분하자면 전자는 수탁기관이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고 후자는 사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함

② 위임

- 위임은 각종 법률에서 정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함
- 행정권한이 위임되면 그 권한은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수임기관의 권한으로 사실상 이관됨

위임과 위탁의 비교

같은 점	다른 점	
	위 임	위 탁
행정권한을 본래의 권한자에게 그대로 유보한 상태에서 수임·수탁 받은 자가 그의 명의로 책임 하에 행사함	하부행정기관이나 보조기관을 대상으로 함 (주로 상하관계간에서 이루어 짐)	다른 행정기관이나 법인·단체 또는 사인을 대상으로 함 (주로 수평관계간에서 이루어 짐)

③ 대행

- 대행은 실정법상으로 여러 의미로 규정되어 있으나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됨. 첫째, 행정기관이 법령상의 권한을 그의 명의로 책임하에 행사하되 권한의 행사에 따른 실무를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행하게 하는 경우이며, 둘째 대행기관이 그의 명의로 권한을 행사하되 그 법률적 효과가 본래의 권한자인 행정기관이 행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음
- 대행은 권한대행과 같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방식에 관해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민간과 정부의 관계에 해당하는 대행에 관하여는 일반적인 규정이 없고 지방공기업법 제71조와 개별법에서 대행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음



지방공기업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제71조(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①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반면,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법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민간위탁 조례에 일반적인 내용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법에 민간위탁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도 민간위탁이라는 정책수단을 선택할 수 있음

④ 아웃소싱(외부조달 또는 외부자원 활용)

- 아웃소싱은 행정기관이 내부적으로 수행하는 사무 또는 법령에서 행정기관이 수행해야 하는 사무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무를 직접 행정기관이 수행하지 않고 이들에 대한 수요자적 입장에서 외부로부터 구매하는 방식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함
- 원래 아웃소싱 개념은 민간분야에서 사용되던 개념으로 특정기관 또는 조직이 내부적으로 필요로 하는 특정재화나 서비스를 직접 생산하여 충당하지 않고 이들에 대한 수요자적 입장에서 외부로부터 구매하는 방식으로 대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형적인 형태는 행정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외부에서 조달하는 조달물품에 대한 구입을 들 수 있음

⑤ 민영화

- 광의의 의미에서 민영화는 재화·서비스의 생산 및 공급에 있어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거나 민간부문의 역할을 증가시키는 모든 활동을 총칭함
- 협의의 개념으로서의 민영화는 국가의 정치 및 경제적 여건에 따라 특정되어 지는데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공기업 등 국유재산을 널리 매각하는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은 국유재산의 매각이 협의의 민영화로 이해되고 있으며, 정부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미국에서는 민간위탁이 협의의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음

⑤ 용역

-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은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 일방이 되어 계약상대방인 사인(私人)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행정수요를 충족함과 동시에 사법상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의미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2조는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여 적용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호, 2017.7.26.)는 입찰 및 계약 적용범위를 건설계약, 용역계약, 물품계약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용역계약은 ① 「건설기술관리법」·「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에 따른 기술용역, ② 학문 분야의 기초·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인 학술용역, ③ 그 밖의 용역인 일반용역으로 분류하고 있음
- 서비스 공급 목적 및 주체를 기준으로 볼 때, 민간위탁은 위탁받은 사무를 수탁기관이 자신의 명의로 책임으로 행정서비스를 직접적으로 대시민에게 공급하는 형태이나, 용역은 행정기관이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민간에게 용역을 의뢰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구매하고 행정기관이 최종적으로 대시민 행정서비스 공급을 시행하는 형태임
- 민간위탁과 용역의 추진절차를 보면, 용역은 입찰공고→입찰참가→낙찰자 결정→계약심사→계약체결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나, 민간위탁은 시의회 동의→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위수탁협약 체결이라는 엄격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짐

제 2 장

민간위탁 계약 유형 및 절차

1. 민간위탁 계약대상 분야
2. 민간위탁의 계약 유형
3. 민간위탁의 계약 절차



제 2 장

민간위탁 계약 유형 및 절차

1. 민간위탁 계약대상 분야

- 민간위탁의 대상은 지방행정의 핵심부문을 제외한 여러 영역에서 해당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방향 및 우선순위에 따라 다양한 분석을 토대로 결정하게 되는데 기능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구분	기능유형	예시적 사업
1	민간수행이 효율적인 비교적 단순집행 기능	주차위반차량 견인 및 관리, 도로유지·보수관리, 시설물 유지·보수, 공원시설 관리, 식당운영,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관리 등
2	비권력적 시설관리기능 등 민간참여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기능	하수처리장, 쓰레기소각장, 분뇨처리장 운영 등
3	민간이 더 우수한 전문기술을 갖춘 시험·연구·조사기능	건설안전시험, 교량안전점검, 설계 감리 등
4	단순집행적인 시설·장비관리기능	차량·중장비관리, 청사관리, 조경관리, 방호관리, 가로등·전기시설관리, 통신장비관리, 관광지·유적지 관리 등
5	서비스 제공기능	방역, 예방접종, 검사업무, 민간교육, 장묘(납골당, 공원묘지)관리, 시험관리 등
6	민간이 운영시에 운영이 활성화되는 기능	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 등 주민이용 개방시설 등
7	비영리사회단체에 재정보조 등을 통해서 관리가 효율적인 기능	각종 복지회관 등 사회복지시설, 도서관, 박물관, 청소년수련시설 등
8	민간시장기능을 통해 자원동원이 효율적으로 이용 가능한 기능	양묘, 화훼관리, 잠종관리, 원종관리 등
9	급속히 발달하는 기술·기능습득이 필요한 사무	기술교육, 직업훈련 등 교육용역사업 등
10	현업 및 생산·제작기능	공보발간, 홍보물 제작, 기타 간행물 제작 등

1) 계약체결 방법별 분류

- 정부의 계약은 경쟁의 유형에 따라 일반경쟁계약, 제한경쟁계약, 지명경쟁계약, 수의 계약 등으로 구분됨
 -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원칙적으로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 입찰(일반경쟁계약)에 부쳐야 함
 -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명경쟁계약을 위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음
- 대부분 사회적협동조합과 관련한 일반용역 계약에서는 일반경쟁이 일반적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의 공공조달 및 계약관련 요구사항 중 하나인 사회적협동조합간 경쟁 등을 위해서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의 방법을 채택할 수 있음

① 일반경쟁계약

- 계약대상물품의 규격 및 시방서와 계약조건 등 계약내용을 널리 공고 하여 일정한 자격을 가진 불특정 다수인의 입찰희망자를 모두 경쟁입찰 에 참여시켜 국가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모든 계약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② 제한경쟁계약

- 일반·지명 경쟁 계약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경쟁에 따른 장점을 취함으로써 계약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기 위한 제도로서 일반 및 지명경쟁의 중간적 성격의 계약제도임
 -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 계약,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는 물품구매 계약,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 계약,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물품제조·구매·용역, 기타 계약으로 지역제한이 필요한 경우 등에 활용됨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기재부 장관과 협의하여 공고한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 계약(중소기업자간 경쟁대상 품목),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음
 - 대표적으로 실적에 의한 제한, 기술보유상황에 의한 제한, 지역제한,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제한, 재무상태에 의한 제한 등이 있음

③ 지명경쟁계약

- 특수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 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등에서 경쟁참가자를 지명하여 계약을 하는 제도임
- 이 제도는 신용과 실적 및 경영상태가 우량한 업체를 지명하기 때문에 계약이행에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매계약에 소요되는 경비 절약 및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한편 비교적 긴급 구매의 장점이 있음

경쟁계약 유형별 개념 및 참가자격

구분	개념	참가자격 및 기준
일반경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특정다수의 입찰희망자를 경쟁 입찰에 참가토록 한 후 그 중에서 국가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 입찰방식의 기본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입찰목적물의 제조·공급에 필요한 시설, 점포를 소유하고 있는 자 ·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면허, 허가, 인가, 등록 등을 받은 자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제한경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제한하여 입찰케 하는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시금액 미만의 용역에 대한 지역제한 ·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 · 중소기업간 경쟁지정물품 재무상태 등에 의한 제한입찰
지명경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력·신용 등에 있어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특정 다수의 경쟁 입찰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케 하는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의 성질·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기술 · 실적을 갖춘 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 중소기업간 경쟁지정물품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④ 수의계약 및 소액수의계약 제도

- 수의계약은 계약상대자를 결정함에 있어 경쟁입찰 방법에 의하지 않고 특정인을 계약상대방으로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경쟁계약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계약제도임
- 계약이행이 가능한 자가 1인이거나 경쟁계약에 의하여 구매할 수 없는 경우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됨
- 수의계약 대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및 국가계약규칙 제 31조) 계약담당 공무원은 물품 제조·구매시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음

수의계약 개념 및 참가자격

구분	개념	참가자격 및 기준
수의계약	경쟁입찰에 부치지 않고 특정의 상대를 선정하여 그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특수목적 위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p><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등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 ·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특정한 기술을 요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 · 5천만원 미만인 용역 <p><참가자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경쟁 참가자격과 동일함
제공의에 의한 수의계약	입찰에 부쳤으나 입찰자가 없거나 입찰자가 있어도 낙찰자가 없어 유찰이 되는 등 입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실시하는 계약	<p><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찰참가자는 물론 당해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자로서 국가에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자 <p><참가자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경쟁 참가자격과 동일함

2) 공급방법별 분류

- 공급방법별로는 공급방법에 따라 총액계약, 단가계약, 제3자 단가계약으로 분류됨
- 대부분 사회적협동조합과 관련한 일반용역 계약에서는 입찰 또는 계약시점에서 확정된 총액(전체 사업예산)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함

공공방법별 분류

구분	개념	참가자격 및 기준
총액계약	당해 계약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총액으로 계약체결	· 수요빈도가 적고, 제시된 규격에 의하여 제조·납품하는 물품 및 용역
단가계약	· 제조, 수리, 공급, 사용 등 일정기간 동안 계약목적물의 안정적 공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단가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조달청에서 계약자에게 납품 요구	· 수요빈도가 많고, 정형화된 규격에 의하여 제조·공급되는 물품(철근, 시멘트, 레미콘, 아스콘 등 계약물량을 조정·통제할 필요가 있는 물품)
제3자 단가 계약	· 계약방법의 특례로서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물자로 수요기관에서 직접 계약자에게 납품요구	· 행정사무자동화 기기, 우수제품 등 계약자 규격물품으로 제조·공급되는 물품(전자복사기, FAX 등)

3) 민간위탁 유형에 따른 계약의 분류

- 민간위탁에서 공공부문과 민간기관(기업)간 계약의 특성에 따라 네 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① 서비스계약(service contract)

- 관리·운영을 위하여 인력용역회사와 계약하고 인건비만을 지불하거나, 시설유지비·공공요금·일반수용비·기타 경비에 대하여는 직영하되 기타 일부 전문분야 즉, 광고·판촉 등에 있어서는 민간과 계약하여 위탁처리하는 방식임
- 각 서비스를 담당하는 전문업체의 효율성을 활용할 수 있어 능률적인 면이 있으나, 서비스공급체제의 이원화로 인해 개별적 서비스의 수탁자가 상이하여 서비스의 공급조정이 곤란함

② 운영관리 계약(management contract)

- 인력관리, 시설유지 등 경영관리 전반을 민간기업과 계약하고 대단위 시설공사, 기반시설공사 등 소요예산 규모가 큰 것은 직영하는 방식임. 즉, 소수의 공무원이 일정한 액수이상만 소요되는 대형의 계약에 대해서만 업무를 담당하고 총괄적인 지도·감독만 하는 관리체제로 유지됨
- 경영능률의 달성 효과가 큰 반면 민간업체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업무한계가 모호함 많으며, 계약기간은 보통 3년~5년 이내에서 계약되어 운영되고 있음

③ 임대계약(lease contract)

- 현재의 자산은 그대로 두고 인력이나 시설관리 전체를 민간업체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예상수익을 바탕으로 한 최고가 사용료를 제시한 자에게 운영권을 임대하는 경우와 최소의 경비로 관리운영권 일체를 위탁하는 경우가 있음
- 계약 조건상 매년 이익금의 일정률을 배당하고 흑자운영이 계속되는 일정기간 동안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약정할 수도 있음

④ 양여계약(concession)

- 고정자산은 공공부문의 자산으로 남아 있게 되나, 양여계약 기간 동안은 소유권이 민간에게 양여되고,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고정자산은 반드시 처음의 조건과 동일한 상태로 위탁자에게 이전되는 방식임

민간위탁의 유형별 특성 비교

구분	서비스계약	관리운영계약	임대계약	양여계약
투자비의 조달	공공부문	공공부문	민간부문	민간부문
운영비의 조달	공공부문	공공부문	민간부문	민간부문
고객과의 계약	공공부문	민간부문	민간부문	민간부문
민간책임과 자율성 수준	낮음			높음
민간자본의 필요정도	낮음			높음
재정적 위험	낮음			높음
계약기간	1~2년	3~5년	5~10년	2010년
가격결정 책임	공공부문	공공부문	계약	계약
비용지불방법	서비스공급 - 단위가격의 일괄지급	비용과 생산성 향상에 대한 보너스	기본요율 적용	요율 적용
민간위탁의 주요 목적	운영효율성증대	운영효율성증대	운영효율성증대	민간자본의 활용/ 운영효율성증대

4) 낙찰자결정제도별 분류

- 낙찰자선정방법은 입찰한 업체의 우열을 가리는 과정으로서, 낙찰방식에 따라 낙찰제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음
- 낙찰자결정제도의 종류는 낙찰방식에 따라 적격심사제, 2단계 경쟁 입찰제, 규격·가격 분리 입찰제,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로 구분할 수 있음

① 적격심사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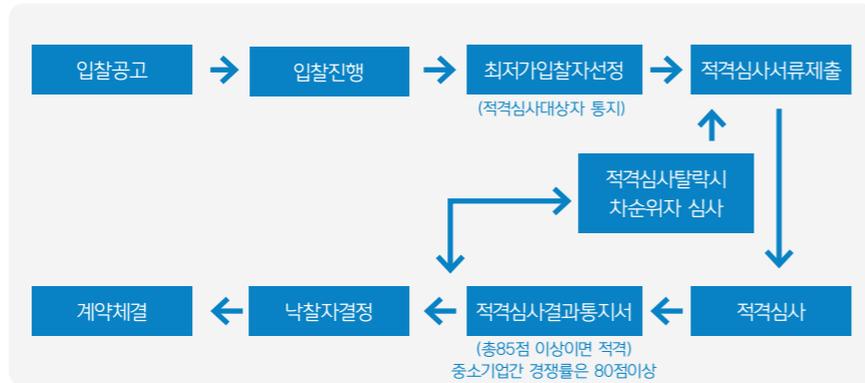
- 적격심사낙찰제도는 입찰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입찰가격이 적정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평점을 받은 우량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함으로써 계약이행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업체가 덤핑입찰에 의하여 낙찰되는 것을 예방하고 계약이행의 신뢰성을 확보함은 물론 업체의 경영합리화 및 품질향상을 유도함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을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낙찰자로 결정하기 전에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당해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야 함

※ 다만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으로서 물품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경우, 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임의적으로 적격심사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적격심사는 납품능력, 입찰가격, 신인도 등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중소기업간경쟁물품인 경우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함

- 적격심사를 시행하게 되면 최저로 투찰할 수 있는 가격 하한선이 “낙찰 하한율” 개념으로 존재하여 평균 85~88% 수준 이상의 낙찰율을 확보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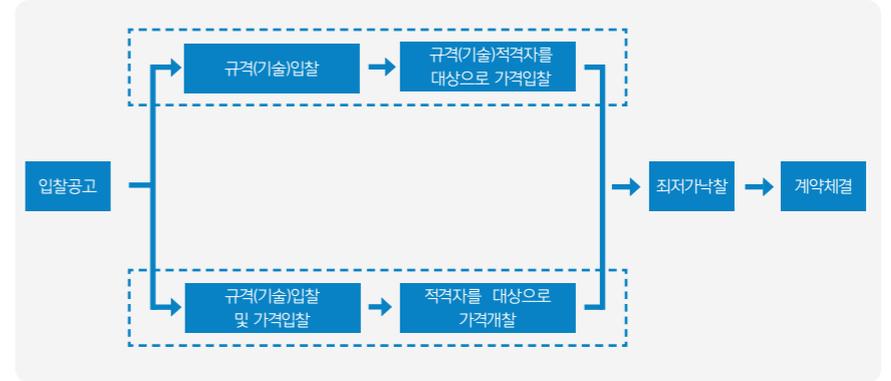
적격심사제 계약 절차



② 2단계 및 규격·가격 분리입찰

- 2단계 및 규격·가격 분리입찰은 수요기관에서 제시한 규격 이상의 성능과 규격 등을 갖춘 제품에 한해 가격경쟁을 시킴으로써 제조업체의 성능 향상 및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고 품질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임
- 물품제조·구매를 추진함에 있어서 미리 적절한 규격 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먼저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동 입찰에서 통과된 자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실시하는 2단계 입찰 또는 규격·가격분리 입찰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 사회적협동조합의 공공기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최저가”낙찰제 적용에 따른 문제점이 상기 “2단계 경쟁 및 규격·가격동시 입찰”을 시행한 결과로 나타난 현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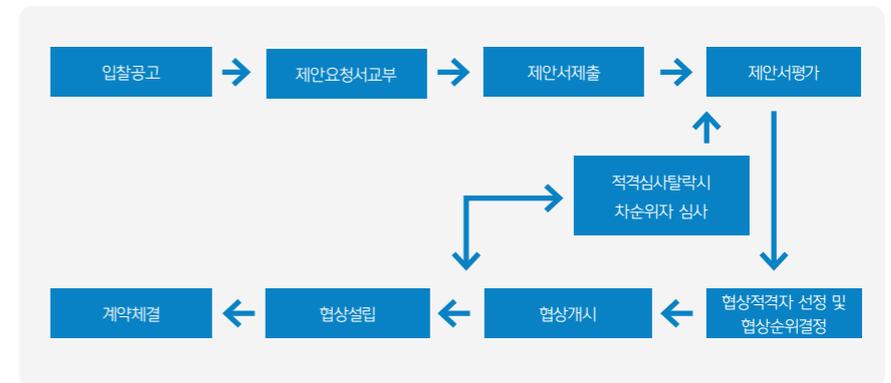
2단계 및 규격·가격 분리입찰 계약 절차



③ 협상에 의한 계약

- 협상에 의한 계약은 입찰참가자가 제시한 제안서와 입찰가격을 종합 평가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협상절차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임
-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밖에 국가안보 목적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 계약을 체결함

협상에 의한 계약 계약절차



2. 민간위탁의 계약절차

- 용역은 업무편의상 기술용역과 일반용역으로 구분되는데, '기술용역'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 제1호, 건축사법 제2조 제3호·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8호·9호, 소방법 제61조의 2·3, 측량법 제2조 제1호등에 규정한 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이며 이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용역은 '일반용역'으로 분류하고 있음
- 현재 사회적협동조합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부분의 협의의 의미에서 위탁이 아닌 광의의 의미에서 위탁으로 계약적인 측면에서는 일반용역을 낙찰 받아 수행하는 형태임

1) 용역의 종류

- 사회적협동조합이 제공하는 문화예술공연, 폐기물처리, 시설물관리청소경비 등은 일반용역이며 돌봄서비스, 방과후 서비스의 경우 명확히 분류되어 있지 않으나 법령상 기술용역이 아니므로 계약분류상 자연스럽게 일반용역으로 분류됨

구분	종류
일반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통신관련 용역 - 폐기물처리 용역 - 시설물 관리, 청소, 경비 용역 - 조경관리 용역 - 육상운송 용역 - 학술연구 용역 - 전시 및 행사대행 용역 - 광고 및 디자인 용역 - 감리 및 검사 용역 - 장비 유지·보수 용역 등 - 보험 용역
기술 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술용역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용역으로서 엔지니어링 활동 - 기타 개별법에서 정한 기술용역 등

2) 일반용역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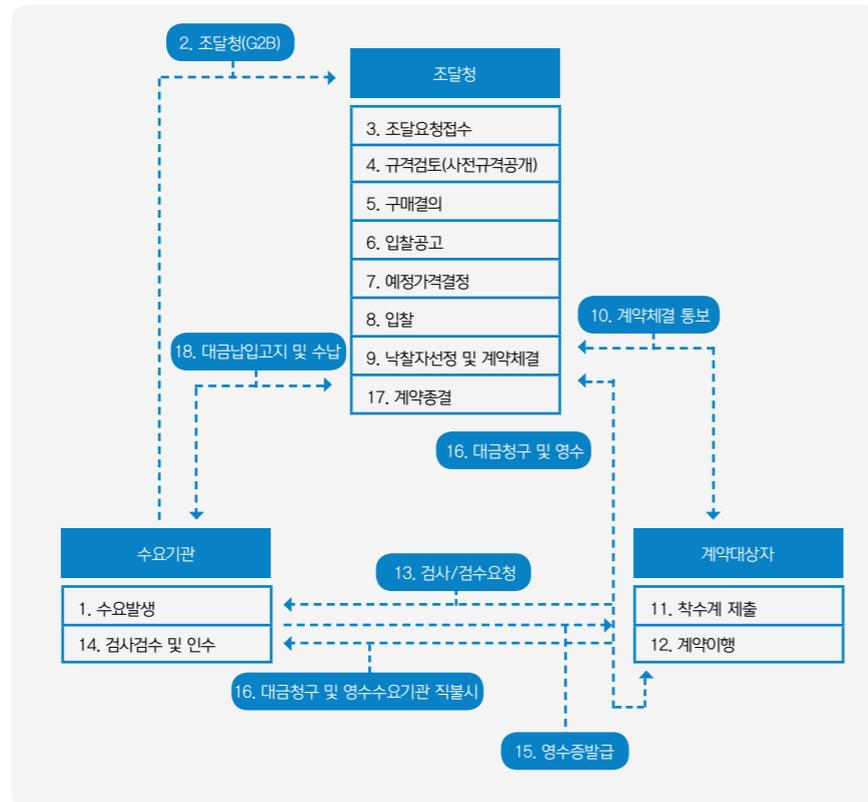
구분	종류	
정보통신관련용역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동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기술·역무 기타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수단을 도급받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하며 관련장비의 유지보수용역과 소프트웨어관련 사업으로 구분된다.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용역은 쓰레기·연소재·오니 등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을 시·도지사 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 처리장소로 운반하여 소각·파쇄·고형화·매립 등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영업을 말한다.	
시설물관리청소 경비	시설분야용역이라 함은 청소(위생관리)업무, 시설경비업무, 시설(물)관리업무 및 이에 준하는 용역중 각각 또는 2종류 이상의 용역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나의 같은 계약으로 도급받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육상운송용역	육상운송장비(궤도차량 및 고정식 장비 제외)를 이용하여 인원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업무를 도급받아 대행하는 영업으로서 운전자나 딸린 육상운송장비의 임대활동을 포함한다.	
학술용역	학술연구용역이라 함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이 광범위하고 심층있게 적용되어야 할 비정형화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정부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전시 및 행사대행용역	각종 전시회 및 행사를 기획·조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전시장행사와 관련된 조사, 기획, 설계, 구성, 제작, 시공감리 등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을 맡아 이러한 시설의 내장, 외장, 전시장치, 기계설비(음향, 영상 등) 등을 종합적으로 구성·연출하는 사업도 포함된다.	
광고 및 디자인 용역	광고	광고주를 대리하여 광고에 관련된 시장조사 및 광고기획, 광고물제작, 매체선택, 매체와의 광고계약, 광고물을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정기간행물, 신문 등의 광고매체에 광고하는 업무를 총괄적으로 대행하는 용역을 말한다. 광고용 설치물(광고탑 등)을 임대하는 활동도 여기에 포함된다.
	디자인	특정 메시지, 이미지 또는 개념을 시각적으로 전달하거나 가상현상등을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전달 또는 표현하기 위한 시각전달매체를 기획, 디자인 및 관리하는 용역을 말한다. 비디오화면 구성 및 기업로고 등의 디자인, 기술적인 정확성 또는 해석기술이 요구되는 설명도 및 삽화를 제작하는 업무도 포함된다.
장비 유지보수 용역	장애발생에 따른 발생원인 파악·조치, 정지 및 기능저하를 미연에 방지, 사용방법의 개선 등을 통해 운영효율의 극대화 및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용역을 말한다. 이를 위해 유지·보수업체는 정기 예방점검, 부품의 정기적 교환, 이력관리, 신속한 고장처리, 기술상담 등의 업무를 이행한다.	

※ 일반용역은 정보통신관련용역, 폐기물처리용역, 시설물관리-청소-경비용역, 육상운송용역, 학술용역, 전시 및 행사대행용역, 광고 및 디자인 용역과 장비 유지보수용역 8개로 구성되어있음

3) 용역 계약 업무처리절차

- 광의의 의미에서 일반용역 계약 체결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총 18단계의 입·낙찰 과정을 거쳐야 함
- 협의의 의미에서 위탁교육은 상기절차를 따르지 않고 일반적으로 “위탁 사업공고 → 위탁 사업 계획서(제안서 평가) → 위탁사업자 선정”의 3단계를 거치게 되며 계약적인 측면에서는 “일반경쟁” - “협상에 의한 계약,” “적격심사,” 또는 수의계약에 해당될 수 있음

용역서비스의 업무처리절차



용역계약의 단계별 처리절차

단계별 처리절차	내용
1. 수요발생	수요발생은 수요기관의 사업목적에 필요한 물품 및 용역의 필요에 따른 것이며, 해당예산을 확보함으로써 발생한다.
2. 조달요청 (나라장터)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를 필요로 할 때에는 품명, 규격(시방서), 납기, 특수조건 및 추산가격, 배정예산 및 물품수급관리계획 반영 여부등을 기재하여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 조달요청한다. 다만, 구매예정금액이 품명당 5,000만원 미만인 경우와 수요인급, 국방목적등 자체구매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에서 자체구매할 수 있다.
3. 조달요청접수 (나라장터)	조달요청서는 본청 및 수요기관을 관할하는 지방청에서 접수하며 접수와 동시에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개한다.
4. 규격검	육상운송장비(궤도차량 및 고정식 장비 제외)를 이용하여 인원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업무를 도급받아 대행하는 영업으로서 운전자가 딸린 육상운송장비의 임대활동을 포함한다.
5. 구매결의	검토가 끝난 조달요청서는 구매결의서를 작성하며, 구매결의서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한다. 가. 구매관리번호 나. 수요기관명 다. 정부물품목록번호, 품명, 규격, 수량 라. 계약방법 마. 낙찰자 선정방식 (적격심사, 종합낙찰제, 2단계입찰, 분리입찰, 유사물품복수경쟁 등) 바. 법적근거 사. 예산금액 또는 추정가격 아. 협정물자(특정조달) 대상여부 자. 입찰일시(경쟁입찰시) 차. 납품기한 또는 계약기간, 납품장소, 인도조건, 검사 및 검수기관 이외에도 물품구매입찰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 조건, 일반조건, 입찰보증금 수납에 관한 사항 등
6. 입찰공고	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하는 경우(국제입찰 포함)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 시스템)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7. 예정가격결정	예정가격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구매를 위한 경쟁입찰 또는 수의시담을 하기 전에 당해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매가격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정한 가격을 말하며 동 가격은 입찰 또는 시담에 의한 낙찰자 선정의 기준이 되며 계약체결에 대한 최고 상한금액이 된다.
8. 입찰	입찰은 입찰공고에 명시된 입찰시간과 장소에서 실시한다.
9. 낙찰자선정 및 계약체결	경쟁입찰은 입찰 후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자와 수의계약은 수의계약 대상자와 권리, 의무변동(발생, 변경, 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는 법을 행위로서 계약서에 상호 날인(계약금액 3천만 원 이하 제외)함으로써 성립한다. (공동계약과 장기계약을 제외한 모든 내자계약은 나라장터로 요청, 전자계약 가능)

10. 계약체결통보	계약서에는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액을 계산하여 과세문서(계약서)에 인지를 붙임으로서 납부케하고 계약당사자 및 수요기관에게 송부 한다.
11. 납품준비	계약당사자는 계약서에 따라 물품을 납품하며, 계약물품은 계약서 규격, 시방서 및 제반 조건 등에 맞도록 제작한 물품을 공급한다.
12. 납품	계약자는 납품에 필요한 제반 준비사항을 완료한 후에 서면으로 수요기관에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13. 물품납품 및 검사/검수요청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계약목적물에 대한 검사/검수요청을 납품일까지 서면으로 신청한다.
14. 검사 검수 및 물품인수	“검사”는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의거 적합하고 구매규격·시방서대로 제조·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이며, “검수”는 검사에 합격된 계약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품이 없고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물품출납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하며, 검사는 검사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하여야 한다.
15. 물품납품 및 영수증발급	물품을 인수한 수요기관에서는 물품납품 및 영수증을 발급하며, 계약조건에 따른 유보금 및 공채매입 여부 등 대금지급시 참고할 내용을 부기한다.
16. 대금청구 및 영수	수요기관에서 검사·검수가 완료되어 물품납품 및 영수증, 기타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자가 조달청에 대금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반기재 사항, 계약물품의 규격 및 수량, 납품기한 대 실제 납품일, 하자보수금 적립여부, 계약자에게 지급될 금액에 관한사항 등을 확인 후 대금을 청구한다. 다만, 수요기관 직불의 경우에는 해당 수요기관에서 대금청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한다.
17. 계약종결	<p>납품서류 확인결과 하자가 없거나 보완이 완료된 경우에는 계약종결서류를 작성하고, 계약종결 및 분할납품이행 내용(수요기관 직불의 경우는 수요기관 통보내용)을 조달EDI에 입력 한다.경영분석담당관은 해당 계약과에서 지급을 의뢰한 계약종결서류를 확인하고 다음의 금액을 공제하고 계약자에게 지급(계좌입금)한다.</p> <p>가.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 지급액 나. 선금잔액 다. 지체상금 징수대상액 라. 계약금액 지급유보 대상액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기타 설치 및 시운전 미필 등 일부 유보할 사유가 있는 경우) 마. 하자보수보수금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 한함)</p> <p>* 라, 마 항은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음</p> <p>납품대가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국가계약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및 제2항)에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조달청은 위 대가지급 기한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유효한 서류를 갖추어 대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4 근무시간 내에 지급한다. (조달행정역신, 2001. 11. 1.시행 조달 서비스현장)</p>

제 3 장

사회적협동조합의 민간위탁 참여 현황

1. 사회적협동조합 운영 현황
2. 사회적협동조합의 민간위탁 참여 현황



제 3장

사회적협동조합조합의 민간위탁 참여 현황

1. 사회적협동조합 운영 현황

-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복지 서비스의 수요 증가 및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지속적으로 설립이 증가하는 추세임
 - 사회적기업진흥원에 따르면, 경영공시 대상 사회적협동조합은 2013년 113개 → 2014년 183개 → 2015년 322개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및 고용 현황

단위 : (개, 명)

연도	총 조합 수*	총 조합원 수	고용현황			
			총 직원수	여성비율	정규직 비율	취약계층 비율
2015	113	17,386	804	77%	57%	32%
2014	113	32,178	1,566	78%	75%	38%
2015	113	52,860	3,435	74%	71%	40%

* 주* : 총 조합 수는 경영공시(조합원 수 200인 이상 또는 출자금 총액 30억원 이상) 조합만을 대상으로 집계

자료 : 사회적협동조합 경영공시(<http://www.coop.go.kr/COOP/>)

- 특히, 민간위탁 대상 분야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주 사업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전체의 96%를 차지하는 등 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확대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음

업종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현황 ('16.12월 기준)

단위 : (개) (%)

계	서비스 (96%)										제조업 (4%)
	교육	보건 사회복지	시설 관리 환경	문화 예술 스포츠	협회 수리	농어업	과학 기술	도소매	숙박 음식업등		
604 (100)	193 (32)	161 (27)	145 (8)	35 (6)	40 (7)	30 (5)	15 (2)	44 (7)	44 (7)	26	

*자료 : 사회적협동조합 경영공시(<http://www.coop.go.kr/COOP/>)

- 사회서비스 분야의 사회적협동조합을 통계청「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구분하면 ① 교육 ② 보건 및 사회복지 ③ 청소 및 시설관리 ④ 문화예술 및 스포츠로 분류할 수 있음
 - 해당 분류체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에 해당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을 보다 일반화된 사업용어로 정리한 결과임

사회적협동조합의 주요 사업분야

분야	세부분야	
교육	- 방과후학교 - 매점운영	- 진로/직업 - 기타1
보건 및 사회복지	- 돌봄(요양원 등) - 취약계층일자리 - 기타2	- 의료기관 운영 - 의료서비스
청소 및 시설관리	- 청소 - 폐기물	- 컨설팅 - 기타3
문화예술 및 스포츠	- 문화공연 - 문화교육	- 스포츠 - 기타4

-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분야별로는 보건 및 사회복지 분야의 매출액과 매출순손익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청소 및 시설관리 분야가 가장 1년 기준 가장 열악한 수익구조를 보이고 있음

사업분야별 사회적협동조합의 수익구조 (평균, 2015년)

분야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순손익	법인세등	단기순손익
교육	158,604,606	15,559,397	143,045,209	592,954	5,589,949
보건 및 사회복지	616,142,864	39,959,154	576,183,710	144,420	31,413,277
청소 및 시설관리	184,638,956	39,959,154	115,721,199	263,338	-3,904,044
문화예술 및 스포츠	161,780,347	37,297,758	124,482,589	765	-8,308,904

*자료 : 사회적협동조합 경영공시(<http://www.coop.go.kr/COOP/>)

- 사업분야별 운영실태를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분야로 세분류하여 확인한 결과, 수익구조가 가장 양호한 보건 및 사회복지 분야의 각 사업유형(의료협동조합, 노인 돌봄, 간병/가사, 아동돌봄, 장애인돌봄)의 평균 매출이 기타 모든 사업유형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됨
- 각 사업분야 중 2015년 평균 매출액이 가장 분야는 상대적으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의료협동조합 또는 방과후학교 등이었으며, 시설유지 및 관리원가가 높은 건물·시설관리나 문화예술 시설운영에서도 높은 수준의 평균 매출액이 확인되었음

단위 : (원)

**사업분야
(세분류)별
사회적협동
조합의 수익구조
(2015년)**

분	부 사업	매출규모		주요사업
		전체	평균	
교육	방과후학교	9,121,115,565	414,596,162	방과후 학교 위탁 교육 수입, 가입비 수입
	진로 및 직업교육	1,763,351,166	117,556,744	지역맞춤형 교육사업, 진로자립프로그램, 강의료 수입 등
	일반교육	599,466,678	66,607,409	문해 교육, 다문화가정 사업, 문화재 교육 등
	학교협동조합	787,700,014	65,641,668	매점 상품매출
	기타교육	3,630,610,479	129,664,660	지역 사회적경제 교육, 은퇴자교육, 협동조합 교육 등
보건 및 사회복지	의료협동조합	20,378,259,545	1,198,721,150	의료사업 수입, 한방사업 수입, 요양센터 등
	노인돌봄	13,897,101,993	1,263,372,908	돌봄센터운영, 돌봄서비스 사업 수입, 아동발달센터, 간병수입
	간병/가사	7,615,685,177	1,087,955,025	가정관리사 서비스, 가사관리 및 홈클리닉, 재가 장기요양 수입 등
	아동돌봄	1,590,911,663	227,273,095	어린이집 운영, 보육료 수입
	장애인돌봄	1,693,859,377	423,464,844	장애인 돌봄사업 수입, 장애인 활동지원 수입, 후원 수입 등
청소 및 시설관리	청소/방역	935,367,626	116,920,953	청소사업수입, 소독방역 사업 수입, 청소 대행 사업 수입
	건물·시설관리	1,211,082,305	403,694,102	소독, 방역 안전점검 교육, 건물시설관리 용역 등
	세차/세탁	42,028,693	-	세차 수입금
	생활폐기물수거	531,846,464	132,961,616	스크랩 세분화 분류사업, 폐기물 수집사업

문화 예술 및 스포츠	공연/행사	1,354,917,814	248,282,862	문화기획사업, 순회공연, 지역문화공연사업
	전시/관람	724,607,283	181,151,821	전시기획 수입, 공공미술 사업 수입
	스포츠	14,022,000	-	수강료 수입, 회비 수입
	문화예술 시설 운영	3,617,958,660	723,591,732	브랜드사업 수입, 임대료 수입 등

※자료 : 사회적협동조합 경영공시(<http://www.coop.go.kr/COOP/>)

2. 사회적협동조합의 민간위탁 참여 현황

1) 민간위탁 기본 현황

- 사회적협동조합의 2015년 민간위탁 수행 실적은 약 338억원이며, 이러한 수치는 전체 민간위탁 시장규모(5.3조원)의 약 0.6% 수준임(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2015)
 - (중앙부처) 취약계층 고용지원사업(고용부) 위탁 등 약 50억원 규모 사업 수행
 - (지자체) 교육(122억원), 보건·사회복지(95억원), 문화예술(47억원), 사업시설 관리·지원(24억원)을 중심으로 약 288억원 집행
- 사회적협동조합이 참여하는 민간위탁 계약의 낙찰자선정방식 중에는 적격심사(32.8%)와 수의계약(25.5%)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구분	최저가	적격심사	협상에 의한 계약	규격가격 분리	수의계약	기타	합계
빈도(건)	485	3,117	515	14	2,424	2,936	9,491
비중	5.1%	32.8%	5.4%	0.1%	25.5%	31.0%	100.0%

※ 주 : 합계는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계약 중 낙찰방식을 확인 가능한 계약 건수임

자료 :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2015)

2) 사업분야별 민간위탁 현황

- 사회적협동조합은 교육, 보건 및 사회복지, 청소 및 시설관리, 문화예술 및 스포츠 등 사회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민간위탁을 수행하고 있음

교육분야

- 방과후학교(73억원), 고용지원사업(50억원), 진로 및 체험학습(42억원), 학교협동조합(7억원) 등의 사업을 운영
 - (수요자 만족도 제고) 중고등학교 학생, 학부모등이 학교 협동조합을 설립, 교내 매점을 직접 운영하여 안전한 먹거리 제공
 - ※자료 : 학교협동조합은 청소년 경제 교육 효과 제고 및 복지향상 등 사회적협동조합의 새로운 모델 제시('16.10월 기준 전국 28개 학교에서 설립)
 - (안정적 고용 유지) 방과후학교 등 파견 강사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급여 향상 및 자체 역량 강화를 통해 서비스 품질 제고
 - ※자료 : '15년 12개 사회적협동조합이 방과후학교 사업을 수행하여 73억원 매출 발생('15년 방과후 학교 전체 예산은 약 3천억원 규모)

방과후학교 사례 : Teach For Ulsan Coops 사회적협동조합

- (사업) 울산·경남의 농·산·어촌 등 교육 취약지역에 우수한 청년 강사를 파견하여 방과후 학교 및 돌봄 프로그램 위탁 운영
- (성과) 23개 방과후학교 및 80개 돌봄학교 운영으로 약 31억원 매출('15년)
 - * 방과후교육 강사 역량 개발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 운영, 강사 교육 매뉴얼 개발, 전문직 종사자 연계를 통한 강사 교육 등 서비스 품질 향상에 노력

보건 및 사회복지 분야

-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42억원), 공공급식 지원(41억원), 취약계층 주거복지 지원(12억원) 등의 사업 수행
 - (양질의 서비스 제공) 종사자 및 수요자가 책임 경영의 주체로서 함께 참여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 운영으로 소비자 만족도 제고
 - (종사자 권익 향상) 돌봄, 간병 등은 저임금 및 열악한 근로환경 분야로 조합원의 참여를 통해 근로환경 개선 등 권익 향상에 기여
 - * 사회복지 분야는 종사자의 서비스 수행 능력이 수요자 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분야로 종사자의 권익 향상이 서비스 품질 제고에 매우 중요

- (사회적협동조합 위탁 수요 확대) 지자체별로 장애인보호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등 복지시설의 사회적협동조합 위탁 확대 추진중

* 사회복지 분야는 종사자의 서비스 수행 능력이 수요자 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분야로 종사자의 권익 향상이 서비스 품질 제고에 매우 중요

사회복지 시설 위탁사례 : 도우누리 사회적협동조합

- (사업) 노인전문요양원(서울시), 공립어린이집(광진구, 예정) 위탁 운영
- (성과) 요양원 운영을 통해 42억원 매출 발생('15년)
 - 서울시 요양사 최고임금(처우개선), 노사 이해조율, 투명한 비용구조 개선
 - * 기존 위탁운영 법인이 경영적자 및 노조갈등 등 문제로 수탁포기 → 1차 공고시 사회복지법인 대상→2차 공고시 비영리법인 명시→3차 낙찰

- (바우처 지원) 사회적협동조합은 민간위탁 외에도 바우처를 통해 보육, 돌봄, 간병 등 사회복지 서비스 시장에 적극 참여('15년 208억원)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을 통한 사회서비스 제공 현황

-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 대상 보육 및 돌봄, 간병 등의 사회서비스 사업에 바우처 제도를 통해 서비스 비용 지원
 - (사업규모) 1조 3360억원('16년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사업 예산)
 - * 장애인활동지원(7.5천억원), 노인돌봄(1.2천억원) 등
 - (지원내용) 저소득층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서비스 제공 대가 중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비용 지원
 - (서비스 종류) 노인돌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등 12개 사업
 - (지원절차) 신청 → 자격조사 및 결정 통지 → 본인부담금 납부 → 서비스 이용

청소 및 시설관리 분야

- 생활폐기물 수거(19억원), 방역·건물 시설 관리 및 청소(5억원) 등의 사업 수행
 - (근로 여건 개선) 근로자 중심의 직원협동조합 형태를 구성하여 근무시간 조정 및 위생적이고 쾌적한 근무 환경을 조성
 - ※ 기존의 노사 갈등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일반 영리법인의 이윤을 활용하여 근로자의 임금 수준 향상, 사위실 및 휴게실 설치 등 근로 환경 개선
 - (취약계층 고용 확대) 업종의 특성상 고령자 등의 비율이 높음에 따라 취약계층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
 - ※ 청소, 시설관리 사회적협동조합(6개소) 취약계층 고용 비율은 약 87%('15년 경영공시)

청소분야 위탁 사례 : 클린광산 사회적협동조합

- (사업)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역의 생활 쓰레기 수집·운반 사업 수행
- (성과) '15년 약 13억원 매출 발생
- (구성) 고령자 등 취약계층 중심의 직원 고용
 - * 저임금 및 열악한 근로 환경으로 노사 분규가 발생하고 영업난 등으로 기존 업체가 폐업 하자 실적의 위기에 놓인 근로자들이 직원 협동조합을 구성

문화예술 및 스포츠 분야

- 문화시설 운영(36억원), 문화예술 지원사업 및 교육(11억원) 등 사업 수행
 - (문화 소외계층 지원) 장애인 등 취약계층 및 소외지역 대상 공연 제공, 문화시설 운영 등 문화 복지의 사각지대 해소
 - (청년 창업 활성화) 문화예술·체육 분야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창업 기회 확대 및 청년 일자리 창출
 - * ('16년 청년 협동조합 창업 우수팀 : 플랜비) 은퇴한 스포츠 선수들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취약계층 대상 및 일반 생활 체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

청소 및 시설관리 분야

문화예술 사업 위탁사례 : 자바르떼 사회적협동조합

- (사업)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 등 취약계층과 농촌 등 문화소외 지역에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운영, 시각장애인 통기타 강사 양성 등
- (성과) 지역기반 문화콘텐츠 개발 사업 등 '15년 3.6억원 매출
- (계약)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수의계약 등

3) 지역별 민간위탁 현황

- 지역별 민간위탁 현황분석 자료는 지방자치단체 <e-호조> 시스템의 공공구매 자료 중 일반/응역에 해당하는 항목을 바탕으로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적협동조합에 발주한 민간위탁의 총액은 약 129.1억원으로 추정됨
 - 지자체가 사회적협동조합에 발주한 민간위탁 사업 총액은 연간 약 288억원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나(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2015), <e-호조>에 등록된 공공구매 자료에서는 이 중 129.1억원에 대한 자료만을 확인할 수 있음
-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민간위탁을 가장 활발하게 시행 중인 지자체는 경기도로 전체 중 약 43.1%인 약 64.2억원의 사업을 발주하고 있으며, 이어 서울특별시가 약 26.9억원(전체 중 약 15.9%)으로 나타남
 - 반면 건당 민간위탁 금액은 울산광역시 가장 높은 약 1,619.2만원, 다음으로 전라북도가 약 1,479.0만원을 기록하는 등 사회적협동조합과 비교적 대규모의 민간위탁 사업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 사업분야별 운영실태를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분야로 세분류하여 확인한 결과, 수익구조가 가장 양호한 보건 및 사회복지 분야의 각 사업유형(의료협동조합, 노인 돌봄, 간병/가사, 아동돌봄, 장애인돌봄)의 평균 매출이 기타 모든 사업유형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됨

- 각 사업분야 중 2015년 평균 매출액이 가장 분야는 상대적으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의료협동조합 또는 방과후학교 등이었으며, 시설유지 및 관리원가가 높은 건물·시설관리나 문화예술 시설운영에서도 높은 수준의 평균 매출액이 확인되었음

단위 : (원)

지자체별 사회적협동조합과의 민간위탁 체결 현황(2015년)

지역	금액		계약 건		건당 금액
	전총액	비중	건수	비중	
강원도	530,279,800	4.11%	103	4.98%	5,148,347
경기도	6,323,843,240	49.00%	892	43.11%	7,089,510
경상남도	159,992,200	1.24%	145	7.01%	1,103,394
경상북도	471,531,700	3.65%	67	3.24%	7,037,786
광주광역시	41,475,700	0.32%	8	0.39%	5,184,462
대구광역시	120,198,000	0.93%	10	0.48%	12,019,800
대전광역시	1,026,934,790	7.96%	220	10.63%	4,667,885
부산광역시	58,515,750	0.45%	32	1.55%	1,828,617
서울특별시	2,686,782,810	20.82%	328	15.85%	8,191,411
울산광역시	307,652,600	2.38%	19	0.92%	16,192,242
인천광역시	250,046,590	1.94%	114	5.51%	2,193,391
전라북도	591,615,980	4.58%	40	1.93%	14,790,399
충청남도	244,201,250	1.89%	63	3.04%	3,876,210
충청북도	93,844,100	0.73%	28	1.35%	3,351,575
총계	12,906,914,510	100%	2069	100%	6,619,645

※ 자료 : <e-호조> 시스템

-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 분야별 민간위탁 관련 통계목 지출 수준은 보건 및 사회복지와 청소 및 시설관리 분야가 가장 높음

사회적협동조합업종별 지자체 민간위탁 체결 현황(2015년)

단위 : (원)

분야	금액		계약 건		건당 금액
	총액	전체지출 대비(%)	건수	비중	
교육 서비스업	1,722,214,910	13.34	192	9.28	8,969,869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4,476,563,680	14.61	761	36.68	5,085,600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2,369,378,580	18.36	161	8.30	15,691,248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54,678,900	1.97	421	20.35	604,938
농업, 어업 및 임업	701,362,820	5.43	155	7.49	4,524,921
도매 및 소매업	792,611,110	6.14	28	1.35	28,307,539
숙박 및 음식점업	141,301,260	1.09	47	2.27	3,006,409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562,093,550	4.35	31	1.50	18,132,05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512,608,500	3.97	23	1.11	22,287,326
제조업	541,231,450	1.19	69	3.33	7,843,93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832,869,750	6.45	91	4.40	9,152,414

※ 주 : 업종분류는 <e-호조>의 집계방식 따르며, 통계청의 사업분류와는 상이 함
자료 : <e-호조> 시스템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약 44.8억원(전체 지출대비 41.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약 23.7억원(전체 지출대비 18.4%)임



사회적협동조합 민간위탁
매뉴얼 공공기관용

제 4 장

사회적협동조합 의 민간위탁 활성화 지원사업

1. 사회적 경제조직의 민간위탁 관계 법령
2.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우선구매 지침



제 4 장

사회적협동조합의 민강위탁 활성화 지원사업

1. 사회적 경제조직의 민간위탁 관계법령

- 사회적 경제조직을 우대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으로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3조(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제5조의2(시·도별 사회적 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제12조(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등이 있음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 2018.8.2.] [법률 제11275호, 2012.2.1.]

제3조(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 ① 국가는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사회적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하여 창출한 이익을 사회적기업의 유지·확대에 재투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연계기업은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이익을 취할 수 없다.

제5조의2(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구역의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계획은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수립된 지원계획의 내용 등이 우수한 시·도에 별도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①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사회적기업제품”이라 한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 ②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2.1.>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및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2.1.>

※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5조의2(시·도별 사회적 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12조(공공기관의 우선구매)에서 사회적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있으나 이는 민간위탁이 아닌 재화·서비스의 구매에 적용되는 법으로서 민간위탁에 있어서는 참고법령으로 간주됨

- 정부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계약의 특례)에서는 사회적 경제조직 등에게 일부 표준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조달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17.7.18.] [법률 제14526호, 2017.1.17.]

제5조(계약의 특례)

- ② 조달청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 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수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표준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 간의 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010.5.17., 2015.1.28.>

- 특히,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9조의2(민간위탁 사업 우선 기회제공) “시장은 서울특별시 사무의 민간위탁 시 사회적 기업 등을 관계 규정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제12조(지원)에서 협동조합이 민간위탁 사업에 참여와 가점부여를 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6061호, 2016.1.7.]

제12조의2(우선 구매 등)

③ 시장은 협동조합의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참여를 장려하며, 민간위탁 참여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제7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서 민간위탁 사업에 장애인을 고용하고, 계약심사에서 가점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6061호, 2016.1.7.]

제12조의2(우선 구매 등)

제7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시장은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4.>

1. 시에서 직접 경영하는 사업 및 민간위탁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 고용

2.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우선구매 지침

- 기획재정부는 구매실적 제출 대상 공공기관이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제품(재화 및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는 사회적협동조합 제품의 구매실적을 연례 공공기관경영 평가의 정부권장정책 이행실적 부분에 반영하고 있음
 -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실적은 ①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 중 ‘정부권장정책 이행실적’(기획재정부) ② 자치단체 합동평가(행정안전부) ③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중 ‘정부권장정책 이행실적’(행정안전부)에 준하여 평가되고 있으며, 평가지표 관련 자세한 사항은 [부록 1], [부록 2], [부록 3]을 참조



협동조합기본법 제95조의2 및 시행령 제26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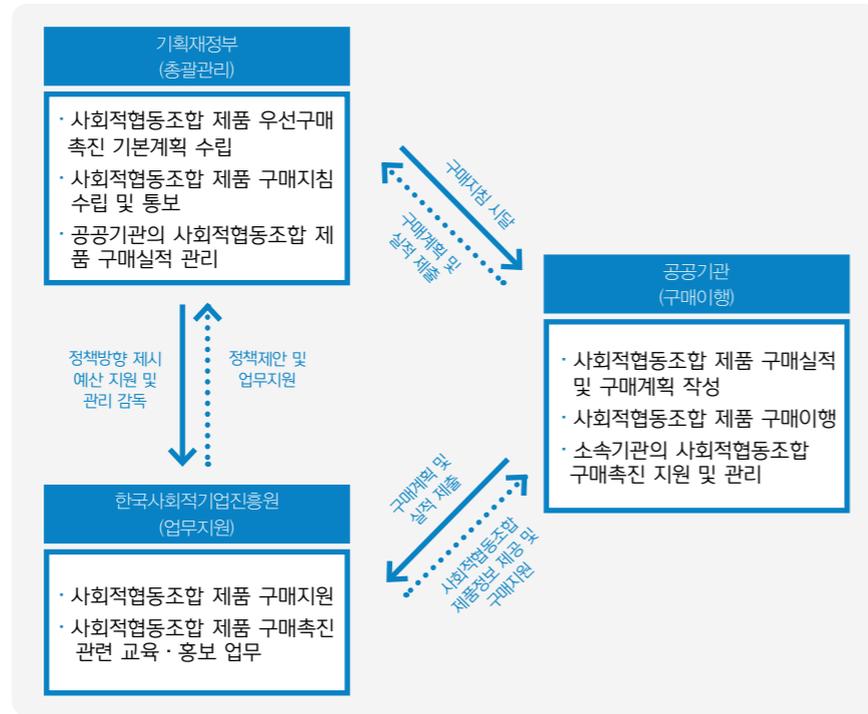
「협동조합기본법」95조의2 -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 ①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판로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구매하려는 재화나 서비스에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 ②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협동조합기본법시행령」제26조 - 구매계획과 실적의 통보

법 제95조의 2항에 따라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2월말까지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해당년도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과 해당기관의 총 구매액에 대한 사회적협동조합 제품의 구매액 비율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우선구매 추진체계



※ 자료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우선구매 지침」(2017.02)

- 대상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며, 2017년 기준 783개의 기관이 우선구매 실적평가 대상에 해당됨
 - 개별 공공기관의 명칭은 매년 기획재정부에서 배포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우선구매 지침」참고

'16년 구매 실적 및 '17년 구매계획 제출 대상 공공기관 현황

국가 기관	자치단체		교육청	공기업	준정부 기관	기타 공공 기관	지방 공기업	기타 특별 법인	총계
	광역시	기초							
52	17	226	17	30	89	201	145	6	783

※ 주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제도

-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되는 제품의 범위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및 주무부처의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여 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로 제한됨
 -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은 2016년 12월을 기준으로 604개소이며, 시·도 신고에 따른 일반협동조합은 포함하지 않음

구분	내용
개 념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및 주무부처가 인가
법적근거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설립인가) 및 제93조(사업)
인가기준	설립동일자 5인 이상, 둘 이상의 이해관계인 포함, 주 사업이 전체 사업량의 40% 이상
인가유형	지역사업형,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취약계층 고용형, 위탁사업형, 기타 공익증진형
인가기관	기획재정부 및 주무부처

※ 자료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우선구매 지침」(2017.02)

- 실적제출 대상기관은 매년 2월 말일까지 당해년도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과 사회적협동조합제품 구매액 비율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있음
 - 구매실적 및 계획 집계 기준 시점은 계약일이 아닌 대금 지급(집행)일 기준
 - 상위기관(본사, 지방교육청)이 소속 기관의 당해년도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을 집계하여, 사회적기업 상품소개 사이트(www.e-store365.or.kr)에 입력
- 공공기관의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는 ① 수요의 발생 ② 구매대상 품목확인 ③ 구매방법 결정 ④ 실제 구매의 단계로 진행되며, 우선구매의 이점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구매처와 방식을 숙지하여 관련 사이트에 상품을 적극적으로 등록·홍보할 필요가 있음



① 1단계 : 구매대상 제품 확인

- (온라인) 협동조합 홈페이지(www.coop.go.kr) → 협동조합 상품물 → 공공기관 우선구매 상품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협동조합이 공급하는 제품과 용역에 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공공구매지원센터”를 통해 구매 상담 가능
 - 공공구매지원센터 상담: TEL. 1566-5365에서 ARS 안내 2번 선택
 - 특히, 청소, 돌봄, 교육 등 사회서비스 관련 사업은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위탁사업으로 계약 가능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관리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목록

구분	내용	품목
교육	방과후교실 위탁, 취업교육 등	· 창업아카데미, 취업성공패키지, 방과후돌봄교실, 놀이시설 안전 교육 등
돌봄/의료	직원 건강관리 지자체 시설위탁	· 예방접종, 건강검진, 노인돌봄, 장애인돌봄 등
문화공연	각종 행사시 공연	· 오케스트라, 뮤지컬, 타악연주 등
도시락	행사, 직원 식사	· 출장부패, 도시락
사무실 소모용품	상시	· 복사지, 토너카트리지, LED 조명 · 종이컵, 화장지, 박스, 장갑
의류	회사 유니폼	· 유니폼, 안전복장
청소/환경 용역	상시(건물 관리)	· 청소, 소독, 방역, 쓰레기 수거, 재활용 쓰레기 처리, 세차, 시설 관리 등
인쇄/IT/디자인	각종 행사, 홍보물 제작	· 현수막, 리플렛, 명함, 어깨띠, 기념패 · 영상물, 웹디자인
기념품	각종 행사 등	· 비누, 치약, 칫솔, 화장품, 세제, 숯 · 건강식품, 꿀, 차, 커피, 제과 세트

② 2단계 :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방법 결정

- (직접구매) 해당기관이 자체구매(직접 발주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 활용) 또는 조달구매(조달청을 통해 구매) 등을 통해 직접 구매
- (간접구매) 공공기관이 용역·물품구매 계약한 업체가 사회적협동조합 용역·물품을 구매토록 계약조건 등에 명시
- (계약방법) 구매 품목 및 추정 가격에 따라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등을 활용한, 현행 법령상 사회적협동조합 단독 수의계약 조항은 없음
 - 사회적협동조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해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관련 계약제도를 활용

③ 3단계 :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

- 협동조합 홈페이지(www.coop.go.kr) 내 ‘협동조합 상품물’에 소개된 상품을 구매
 - 제품 특성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공급능력이 부족할 수 있으니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구매 상담 및 주문
- (입찰자격 및 평가기준) 낙찰자 심사·결정을 위한 평가기준에 사회적 가치 항목을 반영하여 심사
 - 기관별 구매 지침(공기업 등) 또는 조례(자치단체)를 활용하여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 우선 검토 및 심사 시 반영



사회적협동조합 민간위탁
매뉴얼 공공기관용

부록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실적 평가



[부록1] 기획재정부의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실적 평가방식

◆ '16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정부권장정책 이행실적 평가

① 이행도

평가지표	1. 사회적협동조합 제품(재화 및 서비스) 구매실적(70점)
측정산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기관의 당해년도 구매총액 대비 사회적협동조합 제품(재화 및 서비스) 구매액 비율 $X = ('16\text{년도 사회적협동조합 재화 및 서비스 구매액} / '16\text{년도 재화 및 서비스 구매총액}) \times 100(\%)$ <p><평정점(P) 산출공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X < 0.1$, - $X \geq 0.1$, $P = 70$ <p>* '재화 및 서비스 구매총액'은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 기준 공사 제외 물품 및 서비스의 총구매액을 말함. '사회적협동조합 재화 및 서비스 구매액'은 사회적협동조합에서 구매한 공사 포함 모든 금액</p> <hr/>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품(재화 및 서비스) 구매율(X)이 0.1% 미만인 경우 $P = 70 \left(\frac{X}{0.1} \right)$ 공식에 따른 점수 부여 제품(재화 및 서비스) 구매율(X)이 0.1% 이상인 경우 일괄적으로 만점 70점 부여
평가근거/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행실적 자료

② 향상도

평가지표	2. 사회적협동조합 제품(재화 및 서비스) 구매액 향상도(30점)
측정산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년도말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액 대비 당해년도 사회적협동조합 제품(재화 및 서비스) 구매액 비율 $A = ('16\text{년도 사회적협동조합 재화와 서비스 구매액} - '15\text{년도 사회적협동조합 재화와 서비스 구매액} / '15\text{년도 사회적협동조합 재화와 서비스 구매액}) \times 100(\%)$ <p><평정점(P) 산출공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 \leq 0\%$, $P = 0$ - $0\% < A < 10\%$, $P = 3A$ - $A \geq 10\%$, $P = 30$ <p>* '16년 평가 대상으로 신규 지정된 기관의 경우 동 지표를 제외한 '이행도' 지표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평가</p> <hr/> <ol style="list-style-type: none"> '16년도 사회적협동조합 제품(재화 및 서비스) 구매율(X)이 0.1% 이상인 기관의 경우, 전년 대비 증감액과 무관하게 만점 30점 부여 '16년도 사회적협동조합 제품(재화 및 서비스) 구매율(X)이 0.1% 미만인 기관의 경우에는 위 산식에 따라 점수 부여 <p>* 단, '15년도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액이 0원인 기관인 경우, '16년도 구매율에서 '15년도 구매율을 차감한 수치(%P)를 A로 간주하여 향상도 산출공식에 대입</p>
평가근거/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행실적 자료

[부록 2] 행정안전부의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실적 평가방식

◆ '17년도 자치단체 합동평가

평가지표	사회적기업 등 육성	가중치
측정산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식 ㉠-2 사회적협동조합 제품(재화·서비스) 우선구매 실적 =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액* +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실적 향상률** * 사회적협동조합 제품(재화·서비스) 구매율 :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액 / 총 구매액] × 100 ** 사회적협동조합 제품(재화·서비스) 구매실적 향상률 : [('16년 구매실적 - '15년 구매실적) / '15년 구매실적] × 100 ※ 단, 최초로 평가하는 2016년도 평가에 한해, '16년도에 구매실적이 있는 경우 일괄적으로 만점 부여하고, 구매실적이 없는 경우 0점 처리 	
측정산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식 설명 ㉠-2 사회적협동조합 제품(재화·서비스) 우선구매 실적 -공통사항- ·법적근거: 협동조합 기본법 제95조의2(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용어 정의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등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인가받은 사회적협동조합 (평가 세부기준) ㉠-2 사회적협동조합 제품(재화·서비스) 우선구매 실적 가. 사회적협동조합 제품(재화·서비스) 구매율: 총 구매액 대비 구매비율 - 총 구매액 : e호조 시스템상 '16년도 총 구매액 중 공사를 제외한 물품 및 용역 구매 총액 · 총 구매액에 포함할 예산 범위는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민간위탁금,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자산취득비 관련 비목의 전체 집행액을 기준으로 함 -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액 : e호조 시스템상 '16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협동조합 재화 및 서비스 구매 총액 ·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액에 포함할 예산 범위는 모든 비목으로 함 *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는 재화 및 서비스 구매를 모두 포함하므로 위탁사업이나 보조사업 등을 통해 지역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구매실적으로 인정 **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에 지원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전문인력 포함), 사업개발비 지원금은 구매와 관련 없음(총구매액 및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액에서 제외여부 반드시 확인) ※ 일반회계+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제외) 기준 	

평가지표	사회적기업 등 육성	가중치																																																																													
측정산식	<p>나.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실적 향상률: 전년 대비 구매액 향상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액 : 구매율 평가 세부기준 준용 - 전년도 구매액은 확정된 시도 평가실적의 전년도 금액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식 설명 : 시·도(시·군·구 포함) ※ 일반회계+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제외) 기준 평가기준일 : 2016. 12. 31. 																																																																														
자료제출서식	<p>㉠-2 사회적협동조합 제품(재화·서비스) 우선구매 실적</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5">사회적협동조합 제품(재화·서비스) 구매율(A)</th> </tr> <tr> <th>'16년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액(a)</th> <th>'16년 제품 구매 총액(b)</th> <th>(a/b) x 100(c)</th> <th>전체시도 3년평균 구매율(d)</th> <th>A = c/d</th> </tr> </thead> <tbody> <tr> <td>합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시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시군구 합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시</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군</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구</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6">사회적협동조합 제품(재화·서비스) 구매실적 향상률(B)</th> </tr> <tr> <th>'16년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액(①)</th> <th>'15년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액(②)</th> <th>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액 증감(e)= ① - ②</th> <th>'15년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액(f)</th> <th>B = (e/f)x 100</th> <th>실적값* C=(A×50) + (B×5)**</th> </tr> </thead> <tbody>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p>* 단, A≥1 이면 C는 항상 100, A<1 이면 A×50 ** B≥10 이면 B×5는 최대 50, 0<B<10 이면 B×5, B≤0 이면 B×5는 0 단, 최초로 평가하는 2016년도 평가에 한해, '16년도에 구매실적이 있는 경우 일괄적으로 만점(50점) 부여하고, 구매실적이 없는 경우 0점 처리</p>	구분	사회적협동조합 제품(재화·서비스) 구매율(A)					'16년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액(a)	'16년 제품 구매 총액(b)	(a/b) x 100(c)	전체시도 3년평균 구매율(d)	A = c/d	합계(㉠+㉡)						○○시도㉠						시군구 합계㉡						○○시						○○군						○○구						사회적협동조합 제품(재화·서비스) 구매실적 향상률(B)						'16년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액(①)	'15년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액(②)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액 증감(e)= ① - ②	'15년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액(f)	B = (e/f)x 100	실적값* C=(A×50) + (B×5)**																			
구분	사회적협동조합 제품(재화·서비스) 구매율(A)																																																																														
	'16년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액(a)	'16년 제품 구매 총액(b)	(a/b) x 100(c)	전체시도 3년평균 구매율(d)	A = c/d																																																																										
합계(㉠+㉡)																																																																															
○○시도㉠																																																																															
시군구 합계㉡																																																																															
○○시																																																																															
○○군																																																																															
○○구																																																																															
사회적협동조합 제품(재화·서비스) 구매실적 향상률(B)																																																																															
'16년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액(①)	'15년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액(②)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액 증감(e)= ① - ②	'15년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액(f)	B = (e/f)x 100	실적값* C=(A×50) + (B×5)**																																																																										
중요자료	<p>㉠-2 사회적협동조합 제품(재화·서비스) 우선구매 실적</p> <p>가. 사회적협동조합 제품(재화·서비스) 구매율</p> <p>가-1. (e-호조에서 자동 집계되는 구매실적): e-호조 '16년 해당 구매실적 집계</p> <p>'통계자료'의 '총 구매액' 과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액' 화면 캡처 자료</p>																																																																														

평가지표 사회적기업 등 육성 가중치

< 다운받은 엑셀 서식 >

인증구분	지급명령 번호	원인행위 번호	지급일자	부서	적요	거래처명
계						

사업자 번호	구매금액	품의유형	경비구분	통계목	제외 금액*	최종금액

* 제외금액: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금액, 사회보험료

가-2. (e-호조에서 자동 집계되지 않는 구매실적): e-호조상의 해당 지출 건 조회 화면 캡처 자료 또는 구입한 거래처로부터 확인한 구매내역자료
 - 품의유형이 '물품구입'으로만 지출한 경우: e-호조상 물품상세의 '실 거래처 사업자번호' 입력(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실적에 자동집계 되므로 별도 증빙 불필요)

* e-호조 「지출관리」메뉴 → 「지출결산」 → 「기타구매실적」 → 「사업자 등록번호수정」 → 사업자번호로 검색

* e-호조에서 자동 집계되지 않는 구매실적이란, 중증장애인판매시설 또는 기타 일반 유통업체(자치단체나 민간이 운영하는 매장)를 통해 사회적협동조합 제품을 구매하거나, 자치단체와 납품계약을 체결한 자가 사회적협동조합 제품을 구매하여 계약을 이행한 경우를 말하며,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에서 구매한 증빙자료가 존재하면 구매실적 인정

< 참고 : 구매내역자료 서식 >

(단위 : 천원)

지자체명	일자	거래처명*	사회적 협동조합명	구매제품명	제품 구매액
계					

* 거래처명: 중증장애인판매시설명 또는 기타 유통업체명 등

나. 사회적협동조합 제품(재화·서비스) 구매실적 향상률
 - 당해연도 제출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실적 및 전년도 확정 구매실적

측정산식

[부록 3] 행정안전부의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실적 평가방식

◆ '17년도 지방 공기업 경영 평가

지표명	정부권장정책 이행실적			
대 분류	경영성과		중 분류	정책준수
가 중 치	2.0점	지표성격	정량	평가방법
지표정의	• 정부권장정책의 이행실적을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지표별	환산점수		측정기준
	2.0점	근거법률	
사회적협동조합 생산품 구매	2.0	협동조합 기본법	- 물품·용역(공사제외) 총 구매액 중 사회적협동조합 품·용역 구매비율(%)

• 환산점수 = 지표별 취득점수 합계 / 적용 지표수

세 부 평가방법

지 표	산 식	비 고
중소기업 제품	$P = 2 \left(\frac{X}{A} \right) + 14 \left(\frac{Y}{10} \right)$ (단, $\frac{X}{A}$, $\frac{Y}{10}$ 의 최대값은 1, 전년도 실적이 없는 경우 A=75)	X= 제품(물품·공사·용역) 구매총액 대비 중소기업제품 구매율(%) Y=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 대비 기술개발제품 구매율(%) a= 최근 3년간 평균 중소기업제품 구매율(%) * 구매율 통계자료가 2(1)년 자료만 있는 경우 2(1)년 평균 구매율 A= (1.1a)%, 90% 중 낮은 값
중증 장애인 생산품	$(0.7X+0.3Y) \times 2$ 점	X= 총 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제품 구매율(비율), 1% 초과하는 경우 최고 값 1 부여 Y= 전년대비 증가율, 3% 초과시 최고 값 1 부여
녹색제품	$(X+2Y) \times 2$ 점	X = 구매대상 품목의 총구매액 대비 녹색제품 구매비율(%), 80%이상인 경우 최고값 0.8 부여 Y = 전년도 대비 녹색제품 구매비율 증가율(%) * 단, 구매비율이 80%이상이거나 전년대비 10%이상 증가한 경우 최고 값 0.1 부여

중증 장애인 생산품	($0.7X+0.3YX=0\%$ → 0점 $0\%<X<2.5\%$ → $X/2.5 \times 1.0$ 점 $X \geq 2.5\%$ → 2.0점) $\times 2$ 점	$X = (\text{매월 장애인근로자수 합}(\text{경증장애인} \times 1 + \text{중증장애인} \times 2) / \text{매월 상시근로자수 합}) \times 100\%$
사회적 협동조합 생산품	$X \times 2$ 점	$X = \text{사회적협동조합 물품 및 용역(공사포함) 구매액} / \text{물품 및 용역(공사제외) 총 구매액} \times 100 (\%)$ * 1% 초과하는 경우 최고값 1 부여

※ 각지표별 점수는 2.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달성여부는 주무부처의 실적자료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당해 기관에서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측정한다.



사회적협동조합 민간위탁 매뉴얼 공공기관용

2017. 9

사회적협동조합 민간위탁 매뉴얼 공공기관용

발 행 일 2017년 9월
발 행 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경기도 성남시수정로157 (태평2동3440) 7,8층
Tel. 031-697-700
www.socialenterprise.or.kr

디자인제작 (주)이음스토리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4길 25, 8층 812호(성수동2가, 서울숲코오롱디지털타워)
Tel. 02-964-0561 Fax. 02-964-0563
www.eumstory.net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제와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을 사용하려면 사전에 저작권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